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

일부개정예규(안)

1. 개정이유

- 제1심 가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 확대에 따른 보완수단으로서,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, 당사자들이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합의부로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함
- 가사 단독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고액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고액사건이 가사 단독재판부로 착오 배당된 경우 재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

2. 주요내용

-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,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,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함(안 제3조제5항 신설)
-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고액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

하는 경우 재판장은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도록 함(안 제13조제4항 단서, 같은 조 제4호 내지 제6호 신설)

- 배당확정 후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가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3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경된 때 및 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·배당된 때 배당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12호 및 제13호)
- 시행일 : 2023. 3. 1.

3.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 일부개정예규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

일부개정예규(안)

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(재일 2003-4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단독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한다.

1.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
2.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
3.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(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)

제3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, “제4항” 을 “제4항 및 제5항” 이라

고 한다.

제13조제4항 단서 중 “제3호” 를 “제3호부터 제6호까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
5.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
6.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

제13조제5항 중 “제3호” 를 “제3호부터 제6호까지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3호” 를 “제3호부터 제6호까지” 로 한다.

제14조제12호 중 “민사사건” 을 “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” 으로 하고, “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른” 을 “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3호 중 “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” 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후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)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지방법원 등의 합의부 구성 및 사건처리방식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단독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한다.</u></p> <p><u>1.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</u></p> <p><u>2.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</u></p> <p><u>3.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</u></p>

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장판사의 수가 2인 이하인 법원에서는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할 수 있다. 제13조(사건배당 확정후의 재정합의·재정단독 사건의 처리)

① ~ ③ (생략)

④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기록회부서(전산양식 A1101)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단독판사(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를 포함한다)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(가압류,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)

⑥ 제4항 및 제5항

제13조(사건배당 확정후의 재정합의·재정단독 사건의 처리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

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

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

5.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

6.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「가사소송법」 제2조제1항제2호나목4)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사건에 해당하는 때

⑤ 제1항 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결정부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제4항 제1호, 제3호, 「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」 제45조 제2항의 회부에 관하여 불결정을 한

⑤ -----

-----제3호부터 제6호까지,-----

때와 제4항 제2호의 회부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.

⑥ 제1항, 제2항 또는 제4항 제1호, 제3호 또는, 「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」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
1. ~ 3. (생략)

⑦ ~ ⑧ (생략)

제14조(배당확정의 효력)

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이후에는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
1. ~ 11. (생략)

12.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민사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경된 때

13.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

-----.

⑥ -----
-----제3호부터 제6호까지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⑦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배당확정의 효력)

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된 이후에는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
-----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이 -----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-----

13. 제3조제4항 또는 제5항에

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·배당된 때

14. (생략)

따라 -----

--

14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	
연 락 처	(02) 3480-7631